



포항시 남구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개발행위허가 알림-(태양광발전시설-이 [redacted])

1.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. 우리시 [redacted] 상 공작물설치 목적의 허가신청 건에 대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6조(개발행위허가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.

가. 허가내용 (허가-2024-008. 009)

위치	지목	용도지역	허가면적 (㎡)	목적	신청인		기타
					주소	성명	
[redacted]	주차장	2종 일반 주거	6.240	공작물 설치	[redacted]	[redacted]	

나. 제세공과금 : 면허세 금9,000원 (남구 세무과)

※ 허가일로부터 1년간 미 착공 시 허가 취소, 준공기한 내 미준공 시 1년 추가 연장 가능, 2년 내 미 준공 시 원상복구

3.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, 허가조건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목적 사업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,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개발행위 허가증 1부.
2. 개발행위 허가조건 1부. 끝.

PPA고객 신청 접수증명서

접수번호			계약번호			
발전사업자	고객명	이		발전소명	이	
	대인번호			전화번호		
	주소	지번	경상북도 포항시		상업운전희망일	
		도로명	경상북도 포항시		2024-03-29	

발전원	01 태양광	계약전력	398
공급방식	738 삼상4선(220/380V)	공급전압	380V
설치장소	경상북도 포항시		
설비용량	397.5	설비유형	3 일반선로(한진)
고객구분	03 발전사업자	적용약관(규정)	개별전력수급계약(PPA)
전력거래형태	한전거래		
사용전점검기관	3 안전공사(자가용/전기사업용)	공급설비공사업체	
시설부담금	1 표준시설부담금		공공Q), 지중()
설비관리자명		연락전화	
SMS 수신번호			

※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

-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,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.
-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
 - 한전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
 -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,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
 -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
- ※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,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.
 -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
 -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
 -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%를 초과하였으나,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 -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-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3월 11일

대구본부 포항지사장



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제 포항-

발전사업허가증

상 호	이			
대 표 자		연 락 처		
		법인번호		
사 업 내 용	태양광발전사업			
사 업 장 소	경상북도 포항시	토 지		
		건 물	○	
사 업 규 모	원동력의 종류	태양광	설 비 용 량	429.59kW
	공 급 전 압	380V	주 파 수	60Hz
사업준비기간	2024. 1. 10. ~ 2025. 7. 9.			
허 가 조 건	세부허가조건 이행			
기 타	설치면적 1973.948㎡			

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.

2024년 1월 10일

포 항 시

